## 예 산 총 칙

## 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80,782,660	14,423,480
일반회계		463,952,604	13,918,578
특별회계		16,830,056	504,902
П	기타특별회계	16,830,056	504,902
	상수도특별회계	3,323,266	99,698
	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1,009,338	30,28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97,659	20,930
	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	3,317,628	99,529
	주차장특별회계	67,660	2,030
$\  \ $	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6, 196, 904	185,907
	하수도특별회계	2,217,601	66,528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-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859,3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,7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"기금운용계획"과 같다.
-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